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6.
3. 회부연월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등) ①·② (생략)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 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배전망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u> <u>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u> <u>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u> <u>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이하</u> <u>“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u> <u>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배전망</u> <u>의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u>
④·⑤ (생략) 제18조(배전망 증설·운영 계획 의 제출 등) ① (생략) <u><신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배전망 증설·운영 계획 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u> <u>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 -----.

본 개정안은 지역 단위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전망 우선 접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적 취지는 타당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 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제안한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2220262호)에 반영되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개정안과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이원택의원안 (의안번호 22181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220262)	반영 여부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 (안 제16조제3항)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배전망 우선 접속 허용 (대안 제20조제1항)	기반영 (수정 수용)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 반영	공익형 발전사업 접속 관련 사항을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에 포함 (안 제18조제2항)	현행 유지 (대안 미포함)	미반영

2026년 5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배전망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선착순 원칙에 따라 대기 중인 기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및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쟁점이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대안은 막연한 '공익적 목적'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대신, 우선 접속 대상을 설비용량 1MW 이하로 한정하고, 그 자격을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의 협동조합 등으로 법률에 엄격히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하여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수용하였음¹⁾.

한편,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계획 등에 우선 접속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본 개정안 안 제18조제2항은 위원회 대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는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이 특정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접속만을 강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공익성 및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 등) ③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
 - 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무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실무적 검토 의견이 수용된 결과임.

안 제16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우선 점속에 대한 확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정안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문 의 처
02)6788-5537